

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농촌융복합산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핵심경영체 육성 및 확대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로 경영 안정 도모

I 추진 방향

- 농산물 생산·가공·판매·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 및 확대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·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※ 추진근거 :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(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), 제37조(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)

II 사업 개요

- 위 치 : 14개 시·군
- 사업기간 : 2020. 1 ~ 12월(1년간)
- 사업량 : 30개소
- 사업비 : 300백만원(도비 72, 시군비 168, 자부담 60)
- 사업대상 :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(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)
- 사업내용 :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경영·판로 개선 지원
 - 신제품(포장재·디자인 포함) 개발, 체험 프로그램 개발, 홍보 마케팅, 경영·기술 컨설팅,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
- 지원자격 및 요건
 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이고,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

우선 지원대상

- ▶ 최초 인증 취득일이 빠르고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사업자 ※ 갱신 : 최초 인증일 확인
- ▶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(도 및 중앙)
- ▶ 소규모(여성·청년)기업 및 전년도와 비교 매출실적이 증가한 업체

* 소규모 사업자 : 매출액이 2억원 미만

** 여성기업 : 대표자가 여성

*** 청년기업 : 대표자가 만45세 미만인 청년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기계, 장비 구입(단,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한 소모성 도구, 기구 등은 사업비 50% 내 가능)
- 동일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은 인증사업자는 제외
- 최근 1~5년간 정부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(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)
-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이후 사업 포기한 업체(3년 동안 지원 제외)

Ⅲ

시군별 사업량(사업비) 배정기준

- 배정기준 : 2019. 11월말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 수와 페널티를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* 2019년 30개소 제외
- 사업량 : 14개 시·군, 30개소
- 배정내역 : <붙임 1> 참조

Ⅳ

향후 추진계획

- 사업비 확정내시 및 사업 추진계획 통보(도→시군) : '20. 1월
- 사업대상자 선정(시군) : '20. 2월
-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: '20. 3월
- 사업추진상황 점검(시군 협조) : '20년 반기 1회

붙임 1. 시군별 사업비(사업량) 배정현황 1부.

2. 사업시행지침 1부.